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9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6구단108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서비스 주식회사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6. 6. 9.

판 결 선 고 2016.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목록 기재 취득세, 등록세 등의 추징처분과 별지 2 처분목록 기재 각 재산세 등 추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폐기물 수집 처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4. 3. 30. [redacted]공단과 폐기물처리시설용지인 [redacted]단지 확장단지 [redacted] 블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9

30,000㎡(그 후 위 토지는 [redacted]시 [redacted]동 [redacted] 잡종지 29,882.7㎡'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288,500,000원에 분양받는 산업단지 입주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6. 7. 3.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06. 7. 1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7.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감면받았다.

다. 피고는 2014.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별지 1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면제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와 별지 2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과세기간 2007년도부터 2013년도 분까지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추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14.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9

못한 것은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아래와 같이 법령의 개정 등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와 행정청의 부당한 인·허가 지연 등과 같은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이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① 2004. 8. 1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당초 '소각시설의 시설기준'이 시간 당 처리능력 400kg에서 2톤 이상으로 상향되어 기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변경협의가 필요하였고,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2006. 7.부터 2007. 7.경까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양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자료에 기초하여 2008. 1.경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8. 4.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활용 및 주요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redacted]공사, [redacted]환경청, [redacted]국토관리청과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친 후 2008. 12. 8. [redacted]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② 원고의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관할관청인 [redacted]환경청이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소각시설 설치 전에 폐기물 매립시설을 우선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보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여 사업계획서 적합통보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2013. 12. 12.에야 적합통보를,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2014. 3. 27. 적합통보를 받는 등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과 같은 행정청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장 착공이 지연되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3. 30. [redacted]공단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9

하면서 업종을 지정외폐기물처리업, 지정폐기물처리업으로, 건축면적을 6,300㎡으로, 착공예정일을 2004. 12.로, 준공예정일을 2005. 6.로, 분양계약 조건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시 폐기물관리법 및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환영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계획서
>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계획에 대한 검토의견
>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사업지구 내 발생폐기물 중 사업장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10년치를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 3. 분양계약 체결완료 후 15일 이내에 계약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사업시행자로부터 폐기물처리 시설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환경양형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

2) 2004. 8. 1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6]이 개정되어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소각시설의 시설기준'이 "시간당 처리능력 400킬로그램 이상"에서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3) 원고는 2006. 6. 19. [redacted]공사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요청을 하여 2006. 7. 19. 위 공사로부터 관계기관과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4) 원고는 2007. 10.경 주식회사 [redacte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에 관한 용역비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2008. 1. 22. 위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환영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5) 원고는 2008. 3. 24. 이 사건 토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활용 및 주요시설 설치계획을 세우고 다음과 같은 추진일정을 세웠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법이 허용하는 기간까지 허가서류 제출을 보류하고, 스팀 판매처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9

지로 업무지시를 하였다.

2008. 7.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완료 2008. 9. 29.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 2008. 12. 31. 실시계획 변경 승인 2009. 3. 29. 토목공사 착공 및 시설 설치 2010. 3. 29.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소각전용)/시운전완료계획 2010. 4. 1. 상업운전

6) 원고는 2008. 8. [redacted]공사에 기존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한 소각시설 용량으로는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 허가를 득할 수 없으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2008. 9. 22.경 위 공사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통보를 받았다.

7) 원고는 2008. 12. 8.경 [redacted]환경청장에게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착공예정일을 2009. 3. 1.로 준공예정일을 2010. 3. 31.로 계획을 세웠다.

8) [redacted]환경청은 2009. 1. 13.경 원고에게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요구를, 2009. 1. 15.경 다음과 같은 협조 요청을 하였다.

'환경영향평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협의취지는 매립시설을 설치하여 당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2001. 4. 25. 변경 협의시 폐기물매립시설을 소각시설 설치 전에 설치하고, 2008. 9. 12. 변경 협의시 소각잔재물 등은 자체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소각시설 설치 전에 폐기물 매립시설이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한국수자원공사도 2009. 2. 19.경 원고에게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 준공 전에 폐기물매립장이 우선 조성될 수 있도록 세부일정을 포함하는 조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9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0) 원고는 2009. 3. 23.경 [redacted]공사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및 세부 추진 일정'을 제출하였고, 2009. 6. 9.경 인허가를 받지 못한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의 부지정리 등에 관한 공사의 착공신고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11) 한편 원고는 2010. 8. 30.경 영산강유역환경청에 2008. 12. 8.자로 제출한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취하하고, 2011. 3. 2.경 [redacted]환경청에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12) [redacted]환경청은 2011. 9. 23. 원고에게 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소각용량의 적정성 검토, 지상 매립고 하향방안 강구 등의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1. 12. 19.경 [redacted]국토관리청에 소각용량 감소, 매립고 조정 및 기타 협의사항 변경 등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제출하였으며, 2012. 3. 5. [redacted]공사에 같은 내용의 환경보전방안 수립보고서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13) [redacted]공사는 2012. 4. 25.경 원고에게 '2008. 9.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협의시 이 사건 토지의 주변의 공장 소유주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그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앞서 협의한 것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주변 공장 소유주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하여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4) 그 후 원고는 환경보전방안을 보완하여 제출하였으나, 그 보완자료가 미비하자 한국수자원공사는 2012. 8. 27.부터 2013. 2. 18.까지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환경보전방안의 보완을 다시 요구하였다.

15) 원고는 2013. 7. 18.경 [redacted]환경청장에게 최종적으로 '지정폐기물 최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9

및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및 환경조사서에 대한 보완서'를 제출하였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13. 12. 12.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소각시설)에 대한 적합통보를, 2014. 3. 26. 폐기물처리 사업계획(매립시설)에 대한 적합통보를 하였다.

16) 원고는 2014. 4. 30. 피고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4. 5. 2. 착공신고를 한 후 2015. 6. 4. 폐기물처리시설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준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45호증, 갑 제4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9

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규정을 둔 취지, 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331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이 2006. 7. 3.이므로, 원고가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로부터 3년 내인 2009. 7. 3.까지 그 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9

도대로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5. 6. 4.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용도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원고는 3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으면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지연된 기간에 더하여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4. 8. 1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소각시설의 처리능력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변경이 당연히 예상되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까지 2년여 기간이 넘는 동안 사업수행을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아니한 점, ②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에 관한 업무를 추진한 용역회사와의 용역계약도 취득일로부터 약 1년 6개월가량 뒤에 체결한 점, ③ 원고가 2008. 3. 24.자 작성한 내부문건이나 2008. 12. 8.자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준공예정일은 2010. 3. 31.로, 원고는 취득일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토지 사용을 계획하고 있었던 점, ④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제1항은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입주 및 분양 계약시 소각시설 설치 전 폐기물매립시설을 먼저 설치하기로 협의된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의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원고에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9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이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인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2011. 3. 2.경 사업계획서가 다시 제출된 이후에도 이미 2008. 9.경 이 사건 토지의 주변의 공장 소유주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그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였음에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는 이러한 사항이 미비 되어 있었는바, 따라서 2013. 1.경까지 원고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수차례 요구한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조치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폐기물처리시설 용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을 게을리 하는 등 원고의 주관적이고 내부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뿐, 행정청의 잘못으로 인한 인 · 허가 등의 지연 때문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9

<별지 1>

처 분 목 록

순 번	과세물건	세 목	납기내금액(원)
1	[redacted]시 [redacted]동 [redacted]	취득세	43,243,560
		농어촌특별세	4,324,330
		합 계	47,567,890
2		등록세	43,243,560
		지방교육세	8,138,800
		합 계	51,382,36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9

<별지 2>

처 분 목 록

순번	과세물건	과세기간	세 목	납기내금액(원)
1	[redacted]시 [redacted]동 [redacted]	2007년분	재산세	9,451,730
			지방교육세	1,890,346
			합 계	11,342,076
2		2008년분	재산세	11,891,963
			지방교육세	2,378,393
			합 계	14,270,356
3		2009년분	재산세	12,512,125
			지방교육세	2,502,425
			합 계	15,014,550
4		2010년분	재산세	12,512,179
			지방교육세	2,502,436
			합 계	15,014,615
5		2011년분	재산세	12,721,382
			지방교육세	2,544,276
			합 계	15,265,658
6		2012년분	재산세	9,124,005
			지방교육세	1,824,801
			합 계	10,948,806
7		2013년분	재산세	9,437,027
			지방교육세	1,887,405
			합 계	11,324,432
총 계			재산세	77,650,411
			지방교육세	15,530,083
			합 계	93,180,494